

法部 <起案>에 나타난 한성부 범죄 양상과 특징*

유 승 희**

머리말

- I. <기안> 소재 범죄 자료의 성격과 특징
- II.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의 실태와 유형
- III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인의 양상
 - 1. 한성부 범죄인의 지역적 특성
 - 2. 한성부 범죄인의 직업과 범죄양상

맺음말

요약

본 논문에서는 법부 <기안>에 나타난 조율문건의 자료적 특징과 함께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1896년~1906년 한성부 범죄양상과 범죄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안>에 수록된 범죄 사례는 전체 범죄 중에서도 유종신, 징역 종신 이상의 중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치범죄를 비롯하여 유품 관리들의 수뢰, 횡령 등의 범죄행태, 각종 폭력범죄, 경제범죄, 사회범죄

* 이 논문은 2009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 HK교수

투고일: 2010년 5월 10일

심사일: 2010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6일

등 중범죄양상에 대해서 90% 이상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896년~1906년 한성부에서 발생한 범죄현상에 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재산범죄가 한성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1896년~1906년의 시기동안 법부에서 조율한 재산범죄의 비율은 전체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00년 대에는 평균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개항이후 한성부내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 내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성부의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성부 범죄인 가운데 45%가 8도의 농민이 상경하여 저지른 것이며, 그중 57.6%가 경기도민이 행한 것이었다. 한성부가 지방보다 재산범죄가 집중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상경지방민들의 강, 절도 행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셋째, 한성부의 경우 5서 가운데 동서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적으로 4대문 주변이 범죄인의 밀집 지역이었다. 한성부 주요 범죄인 계층은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연령으로, 상인 및 수공업자의 직역을 가진 자였다. 한성부 거주 범죄인의 경우 상인 및 수공업자의 범죄와 함께 재산 기반이 취약한 일용노동자 및 무업, 유개자 등의 범죄가 다른 직역보다 많았다. 또한 연령층과 범죄 유형의 상관성이 드러나 활동성을 요구하는 강도, 적도, 절도 등의 경우 20세 이상 30세 이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재산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위조의 경우는 26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범죄인이 파악되어 다른 범죄에 비해 고른 연령층을 보였으며, 굴충의 경우는 46세 이상 60대까지의 범죄인이 60% 이상을 보여 노년층 범죄율의 주범이 되었다.

주제어 : 법부, <기안>, 범죄, 한성부, 재산범죄, 범죄율

머리말

개항이라는 사회변화는 조선사회에 많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안겨다 주었다. 조선은 문호개방과 함께 근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동시에 열강의 정치, 군사, 경제의 침략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국가의 누적된 사회모순을 여전히 경험하며 저항하는 한편, 조선으로 유입된 외래문물의 경이, 외국인과의 갈등, 대립 등 중층적 외압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개항시기 조선사회의 변화는 각종 범죄들이 난무하는 중요한 사회원인이 되었다. 자신의 생활기반을 잃은 농민들은 화적, 강도의 형태로 일탈을 범했으며, 관리들은 자신의 부를 충족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통해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은 살인을 유발하였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아편은 공공위생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개항 이후 조선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해 근대로의 전환기에 표출되고 있는 민의 일탈양상과 사회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범죄는 그 종류와 발생양상, 구성요건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한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다. 또한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며,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표출되었기 때문에 일상성을 가지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는 사회 환경과 거기에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며, 근대적 의미의 경찰, 감옥제도가 도입되고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권위와 질서가 모색되는 시기인 개항 이후의 사회 양상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텍스트이다.

개항 이후 범죄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 범죄자의 처벌과 관련된 형정운영 및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형사처벌의 근대화와 관련하여 죄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제도와 근대 감옥의 이식 및 확장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¹⁾

다음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살인, 방화, 절도 등 각종 범죄의 성격과 당시의 사회변화를 파악한 연구로, 수도권 한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항 직후 한성부의 화적 활동이 저항운동의 성격으로 분석되었으며,²⁾ <형명부> 분석을 통해 개항 이후 서울의 범죄양상과 정부의 형사정책이 검토되었다.³⁾ 이후 통감부 시기 범죄단속과 사법처리 절차를 담당 한 형사경찰에 주목하여 그들의 역할과 범죄수사, 범죄유형을 고찰한 연구⁴⁾와 조계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의 갈등 양상과 이로 인한 범죄양태를 통해 개항기 인천 조계지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⁵⁾

이처럼 개항이후 범죄관련 연구는 대체로 근대화과정 속에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범죄, 재판제도, 감옥서 등을 조명함으로써 사회사는 물론 한국 형사법상의 근대성을 해명하는 작업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주고

-
- 1) 도면회, 1994, 「갑오·광무연간의 재판제도」, 『역사와현실』 14; 도면회, 1998,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安柱烈, 2006, 「日帝強占初期 刑事司法制度和 證據裁判主義에 관한 考察」, 『朝鮮高等法院 刑事判決錄을 中心으로』, 『法史學研究』 33; 문준영, 2007, 「統監府裁判所 設置에 관한 資料 -倉富勇三郎와 梅謙次郎의 의견서-」, 『法史學研究』 36. 이종민, 1999, 「식민지 시기 형사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근대 감옥의 이식·확장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5.
 - 2) 박은숙, 1997, 「개항 전후 한성부의 화적 활동과 그 특성」, 『향토서울』 57; 1999, 「개항기(1876~1894) 한성부 하층민의 저항운동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05.
 - 3) 도면회, 2009, 「1895~1908년간 서울의 범죄양상과 정부의 형사 정책」, 『역사와 현실』 74.
 - 4) 양홍준, 2006, 「통감부시기 형사경찰제도와 범죄수사」, 『韓國史學報』 22.
 - 5) 민 윤, 2007, 「開港期 仁川 租界地 社會의 研究-조계지 내 갈등과 범죄의 양상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7.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기반으로 근대적 사법기구인 법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범죄도 새롭게 규정되는 갑오개혁 이후의 범죄양상과 범죄인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접점의 시대였다. 국가는 종래의 형조를 근대식 사법기구인 법부로 재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합의하에 형성된 정치시스템을 통해 범죄 또한 시대상황에 맞게 재규정하였고, 범죄인을 처벌하는 행형도 근대식으로 새로 조정하였다. 한편, 조선시대부터 추진했던 각종 금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민인들은 시대적 변화에 조용하며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순응과 일탈을 반복하였다. 유교 윤리에 의해 운영되던 조선후기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민의 양상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어떤 사회적 특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895년부터 1906년까지의 기록인 法部 <起案>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起案>은 1894년 법무아문이 설립된 이후 소속 국인 형사국, 법무국, 검사국에서 작성한 훈령, 지령, 중앙 각부서와 주고 받은 각종 조회, 조복, 통첩들이 수록된 자료이다.⁶⁾ 여기에는 범죄 양상 뿐 아니라 범죄인의 체포 및 신문, 죄인의 심리 및 조율, 판결, 형 집행 사항 등 형사재판의 전 과정이 미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부 <기안>의 자료적 특성과 함께 <기안>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인 조율 문서를 통해 1896년에서 1906년까지 법부에서 조율한 범죄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지역은 <형명부>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성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한성부는 도시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인구의 과잉집중에 따라 주민구성의 이질성이 증대되었고 계

6) 법부 <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도면희, 2003, 『규장각 소장 법부 관련 자료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규장각』 26; 서울대규장각, 1998, 『法部起案』, 해설; 유승희, 2009,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서지학연구』 43.

층간 양극화가 심화된 도시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안> 소재 범죄양상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 <기안> 소재 범죄 자료의 성격과 특징

본고에서 기본 자료로 검토하고 있는 법부 <기안>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영인한 것으로, 형사국기안 42책, 사리국기안 32책, 형사국 사리과기안 4책, 검사국기안 33책, 법무국 검사과 訓指記案 13책, 형사국 검사과 훈지기안 3책 등 총 6종 127책으로 구성되었다.⁷⁾ 영인된 법부 <기안>은 총 15권으로, 각 권의 구성은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서울대 규장각 영인 법부 <기안>의 종류와 문서의 수

| 영인본 권수 | 소속 부서 | | 수록 연도 | 문서 수 |
|------------|-------|-----|--------------------|--------|
| | 국 | 과 | | |
| 1권~4권 중반 | 형사국 | | 1895년 4월~1899년 5월 | 2,445 |
| 4권 중반~8권 | 사리국 | | 1899년 6월~1905년 12월 | 3,758 |
| 9권 | 형사국 | 사리과 | 1906년 1월~12월 | 778 |
| 10권~12권 중반 | 검사국 | | 1895년~1899년 5월 | 2,119 |
| 12권 중반~14권 | 법무국 | 검사과 | 1899년 6월~1905년 6월 | 1,758 |
| 15권 | 형사국 | 검사과 | 1905년 7월~1906년 6월 | 339 |
| 합계 | | | | 11,197 |

7) 서울대규장각, 1998, 『法部起案』, 해설.

법부 <기안>에 수록된 공문서의 시기는 1895년 4월부터 1906년 12월 까지이며, 11년간 총 11,197건의 기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법부가 고등재판소 이하 한성 및 지방 재판소, 경무청(경부), 내각(내부), 탁지부, 궁내부, 군부 등 각 재판소와 중앙 각 부서로 발송하는 상주문, 훈령, 지령, 조회, 조복, 통첩 등이 다수 수록되었다.

황제나 내각총리대신에게 올리는 상주에는 죄인의 사형 집행 및 유배지 결정에 관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각 도 재판소로 발송하는 지령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 적도, 난언, 굴충, 사주 등 각종 범죄인의 형량 조율 및 처결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문서군을 보인 훈령에는 징역 죄인의 赦典, 減等에 관한 사항, 형사재판시 형명부 표식 작성, 각 죄수의 조율 및 방송, 관련 죄인의 誦捉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각 지방 재판소, 경무사, 평리원 등으로 발송되었다. 법부와 대등관인 경부(경무청), 고등재판소, 의정부로 보낸 통첩에는 주로 죄인의 판결 선고서 및 奏本의 관보계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90%이상을 차지하며, 그 밖에 징역죄인의 기간 만료, 죄인의 법부 압송, 징역죄인 압송 시 여비지급 문제 등 형사업무의 세부 사항 등이 조회와 조복의 형태로 나타났다.⁸⁾

이처럼 법부 <기안>에는 첫째, 형률 개정 및 적용에 관한 법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다. 1896년 <形律名例>와 <적도처단례> 등의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지만,⁹⁾ 1905년 『형법대전』이 완성되어 중앙과 지방에 반포되기 전까지¹⁰⁾ 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여전히 『대명률』과 『대전회통』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기안>에는 『대전회통』에는 법조항이 있으나 <형률명례>에는 없을 경우의 법률적용 문제,¹¹⁾ 『대전회통』과 『대

8) 유승희, 2009,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서지학연구』 43.

9) 『고종실록』 권34, 고종 33년 4월 1일.

10) 『고종실록』 권45, 고종 42년 4월 29일.

명률』의 법조항이 상충할 경우 법부의 조정 사항 등이 수록되었다.¹²⁾

아편관련 범죄의 경우 개항 이후 점차 아편을 흡입하거나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자 이와 관련된 범죄인은 증가했으며, 이에 1894년 (고종 31) 법무아문이 「鴉片烟禁戒條例」를 정하여 민간에 유포하였다.¹³⁾ 「아편연금계조례」에 따르면 ‘아편을 범금한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에 처하였고, 아편제구를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나 부탁을 받아 맡아 둔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감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재판소에서는 범죄인의 상황에 따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법부로 질품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법부의 조정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¹⁴⁾

둘째, 유배 및 징역죄인의 처리문제가 다수 기재되었다. 유배죄인의 형량감등 및 방송에서부터 감옥서에서 병사한 죄수 및 병중에 있는 죄수의 처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유배죄인을 압송할 순검의 파송, 죄인 호송의 여비지급, 징역 죄수의 의복 및 철퇴제구 제작, 각 지방 옥사수리비, 감옥서 소용 물건, 죄수의 식비 등 감옥서 운영의 제반 경비에 대한 회계 사항도 수록되었다. 셋째,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0권부터 15권의 기안은 검사국과 법무국 및 형사국 검사과에서 작성한 공문서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들어가기 이전 민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소인의 처리나 범죄인의 압송, 범인체포, 재판에 필요한 증거서류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 <기안>에는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인들의 죄목과

11) 『司理局起案』 第8冊, 光武4年 4月 5日.

12) 『司理局起案』 第16冊, 光武5年 8月 7日.

13)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議案 鴉片의 舊禁을 申明하는 건」, 84쪽; 「法務衙門告示 鴉片烟禁戒條例」, 109쪽.

14) 『刑事局起案』 第33冊, 光武 2年 8月 10日; 『刑事局起案』 第33冊, 光武 2年 12月 21日.

형량을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확정하는 조율과정과 이들에 대한 처교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율문건과 판결 선고서를 통해 당시의 범죄양상과 범죄인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법부 <기안>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의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다. <기안>에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모반, 역모 등의 내란죄를 비롯해서 관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의 범죄와 살인, 강도, 구타 및 상해, 강간 등 폭력범죄, 개인의 재산탈취나 재물거래를 악용하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 인신매매, 인삼 잠매, 私鑄 등의 경제범죄가 나타난다. 그 밖에 방화, 실화, 위조, 아편 등 공안과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와 음행, 음란 등의 성 풍속 관련 범죄, 도박, 굴충, 금송 등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사회범죄 양상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기안> 소재 범죄의 특성을 동일시기 <漢城府裁判所刑名簿> (이하 <형명부>)와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갑오개혁 이후 지방의 각 재판소에서는 범죄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각각 <형명부>를 만들어 범죄인을 성씨에 따라 분류하였다. <형명부>에는 범죄인의 성명, 거주지, 직업, 연령, 범죄의 종류, 선고한 형명 및 笞數, 징역 年數 등이 기록되었다. 또한 재판을 선고한 연월일, 죄수의 형기만료일, 재범 및 초범의 유무도 기록되었다. 사고란도 만들어 범인의 도망, 사망, 特赦, 大赦 여부와 공범자 성명 등 범죄인 신상에 필요한 사정 및 사건 개요를 기재하였으며, 도망이나 사망, 사면일 경우는 그 연월일을 반드시 기록하였다.¹⁵⁾

한성부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한성부재판소에서 작성한 <형명부> 중 1895년부터 1908년까지 약 14년간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약 3년의 기록이 완전히 누락되었으며, 1898년~1900년, 1904년, 1906년은 1, 2개월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본고가 파악

15)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法部令第10號 刑名簿表式」, 606~608쪽.

하고자 하는 1896년부터 1906년까지 <형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인의 수는 1,950명이었다. 반면 <기안>에 수록된 동일시기 범죄인 가운데 <형명부>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범죄인은 424명이었다. 물론 <형명부> 또한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약 3년의 기록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고려해보더라도 법부 <기안>에는 <형명부>의 최소 22%에 해당하는 범죄인이 수록되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전체 범죄인의 22%에 해당된 이들의 특성은 무엇일까. 【표 2】는 법부<기안>에 나타난 징역종신 이상의 범죄인 현황을 제시한 것으로, 刑名 별 범죄인 기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형범죄를 보면, <형명부> 소재 한성부 사형범죄인은 162명이었다. 그 가운데 <기안>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인은 142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였다. 유형별로는 강도 및 적도범이 <형명부>에는 113명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안>에는 10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88.5%의 기록율을 보였다. 살육, 위조의 경우 <형명부>에는 각기 11명, 5명이 파악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기안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법부의 조율을 받았다. 절도범의 경우 89.3%의 기록율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 절도재범자는 <형명부>에 기록된 11인 모두가 <기안>에도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징역종신 범죄의 경우 <형명부>에는 147명이 기록되었으며, 그 가운데 91.2%인 134명이 기안에도 기재되었다. 징역종신 범죄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 및 적도범의 경우 <형명부>에는 30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안에서는 26명인 86.7%가 파악되었으며, 위조의 경우는 89.5%, 절도는 93%의 기록율을 보였다. 특히 절도재범자는 사형범죄인과 마찬가지로 100%의 기록율을 보이고 있으며, 살육, 작변, 수뢰, 사기죄인도 마찬가지였다.

【표 2】 법부 <기안>에 나타난 징역종신 이상 범죄인의 현황

| 형명 | 범죄유형 | 형명부 | 법부 <기안> | 기록률 |
|------|---------|-----|---------|-------|
| 사형 | 강도 및 적도 | 113 | 100 | 88.5% |
| | 살육 | 11 | 11 | 100% |
| | 위조 | 5 | 5 | 100% |
| | 절도 | 28 | 25 | 89.3% |
| | 굴총 | 1 | 0 | 0% |
| | 탈옥 | 4 | 1 | 25% |
| | 합계 | 162 | 142 | 87.7% |
| 징역종신 | 강도 및 적도 | 30 | 26 | 86.7% |
| | 살육 및 구타 | 8 | 8 | 100% |
| | 위조 | 19 | 17 | 89.5% |
| | 절도 | 71 | 66 | 93% |
| | 작변 | 2 | 2 | 100% |
| | 수뢰 및 사기 | 5 | 5 | 100% |
| | 굴총 | 3 | 2 | 66.7% |
| | 기타 | 9 | 8 | 88.9% |
| | 합계 | 147 | 134 | 91.2% |

이와 반대로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은 범죄인의 수는 평균 21%도 안 되었다. 또한 징역 10년에 처한 범죄인은 약 36% 기재되었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죄를 받은 사람은 5.3%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기안> 소재 범죄들의 경우 대체로 사형, 징역종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죄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법부 <기안>에는 <형명부>와 달리 난언, 모반 등 국사범 및 유품 관리인의 공전 유용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다. <형명부>는 태10에 해당하는 罵人, 태20의 구타행위, 태30의 守財 등 경범죄인에서부터 사기, 수뢰, 아편, 살인, 강도 등 징역형 이상에 이르는 중죄인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국사범 및 관리의 뇌물수수, 공전 횡령에 관한 범죄인의 실태는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범부의 <기안>은 살인, 강도 등 징역중신 이상의 형을 받는 죄인은 물론 국사범 및 유품관리자의 범죄 실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안> 소재 범죄 기록의 실태를 보면, 【표 3】은 지방 제도 조사 위원으로 상소를 올려 ‘지방 조사는 급하지 않은 일이고 나라 일에 해로운 일’이라며 난언한 죄인 이승원에 대한 범부의 기안들을 일자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3】 난언죄인 李升遠에 관한 범부의 <기안>

| 문서양식 | 발송처 | 연도 | 월일 | 문서내용 |
|------|------|------|------|--|
| 통첩 | 내각 | 1896 | 4.09 |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한 이승원의 판결선언서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
| 지령 | 고등 | 1896 | 4.09 | 난언죄인 이승원을 태100 유종신형에 처하라는 범부의 심리 |
| 조회 | 우감옥서 | 1896 | 4.10 | 죄인 이승원을 장연군 백령도로 발배하니 의복 행장 등을 査推할 것을 지시 |
| 훈령 | 한성부 | 1896 | 4.10 | 유종신죄인 이승원 유배시 압송할 순검 2인을 택정하여 해주부까지 호송할 것을 요청하는 훈령 |
| 훈령 | 해주부 | 1896 | 4.10 | 유종신죄인 이승원 유배시 압송할 순검 2인을 택정하여 장연군까지 호송할 것을 요청하는 훈령 |
| 조회 | 경무청 | 1896 | 4.10 | 유배종신죄인 이승원 유배시 압송할 순검 청사 요청하는 조회 |
| 훈령 | 장연군 | 1896 | 4.10 | 유배종신죄인 이승원 백령도 유배시 嚴飭監囚할 것을 지시 |
| 통첩 | 내각 | 1896 | 4.11 | 유배종신죄인 이승원의 유배처소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지시 |

난언죄인 이승원의 사건 처리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행되었다. 범부는 1896년 4월 9일 내각으로 통첩을 보내어 고등재판소에서 판

결한 이승원의 판결선언서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고,¹⁶⁾ 같은 날 고등재판소로는 <형률명례> 제 15조 ‘亂言者律’에 따라 태형 100대와 종신 유형에 처하는 지령을 발송하였다.¹⁷⁾ 다음날 4월 10일에는 유배처소를 결정하여 죄인이 수감되어 있는 우감옥서에 ‘이승원을 해주부 장연군 백령도로 발배하니 의복과 행장 등을 꾸리라’고 지시하였으며,¹⁸⁾ 이와 함께 죄인을 해주부 장연군으로 압송할 순검 2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성재판소, 해주부, 경무청에 발송하였다. 또한 유배처인 장연군에는 훈령을 보내어 이승원이 도착하는 즉시 엄히 수감하여 죄수가 도망가는 폐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⁹⁾

살옥 죄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는 봉산군에 거주하는 어명홍이 자기 처 이조이가 간통한 줄 알고 칼로 난타하여 살해한 사건에 대한 법부의 <기안>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의 【표 3】의 난언죄인 이승원과 달리 사건처리과정이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표 4】 살옥죄인 어명홍에 관한 법부의 <기안>

| 문서양식 | 발송처 | 연도 | 월일 | 문서내용 |
|------|-----|------|-------|---|
| 지령 | 평양부 | 1896 | 1.23 | 봉산군 치사여인 이조이 옥사를 신중히 조사하기 위해 초복검안을 속이 보낼 것을 지시. |
| 훈령 | 평양부 | 1896 | 4.01 | 이조이 옥사의 피고 유차손을 즉각 잡아오고 김조이와 차씨를 엄히 조사할 것을 지시. |
| 훈령 | 평남 | 1896 | 11.24 | 은산군 이조이 옥사의 정범 어명홍에 대한 법부의 조율 및 간련 유차손 석방건. |

16) 『刑事局起案』 第5冊, 建陽 元年 4月 9日.

17) 『刑事局起案』 第5冊, 建陽 元年 4月 9日.

18) 『刑事局起案』 第5冊, 建陽 元年 4月 10日.

19) 『刑事局起案』 第5冊, 建陽 元年 4月 10日, 訓令 漢城府裁判所; 訓令 海州府裁判所; 照會 警務廳.

1896년 1월 23일 은산군 봉명방 신흥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법부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의 파악을 위해 초검과 복검안을 속히 보낼 것을 평양부에 요청하였다.²⁰⁾ 이후 평양부에서 보내온 검안 내용을 검토한 후 법부는 4월 1일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간부 유차손과 도망 중인 간범 어명주를 잡아올 것과 이웃인 김조이와 車哥를 조사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을 발송하였다.²¹⁾ 11월 24일에는 살육죄인 어명홍을 『대명률』 인명편에 따라 태100 징역 3년에 처하고 간부인 유차손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평안남도 재판소로 보냈다.²²⁾

이처럼 법부 <기안>에는 한 사건과 관련된 공문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6, 7건까지 나타나고 있다.²³⁾ 또한 법부로 올라오는 사건의 대부분이 법부의 최종 판결을 요구하는 증범죄였으므로 <기안>에서 나타나는 범죄 기록의 공통적인 특징은 법부의 범죄인 조율과정이 반드시 공문을 통해 각 재판소로 발송되었다. 범죄인의 조율공문 안에는 정범 및 간범의 공초 내용 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원인, 개요, 범죄인의 성격, 판결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1898년 9월 한성부재판소로 보낸 법부의 지령에는 과부를 겁탈한 김순철과 간범인 한성천, 손점춘의 공초가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피고와 간범인들에 대한 판결이유와 형명을 기재하였다.²⁴⁾

20) 『刑事局起案』 第3冊, 建陽 元年 1月 23日.

21) 『刑事局起案』 第5冊, 建陽 元年 4月 1日.

22) 『刑事局起案』 第12冊, 建陽 元年 11月 24日.

23) 절도채범자의 경우는 조율문건이 대체로 1건이 나오지만 강도나 적도 등으로 사형죄를 받은 경우는 조율문건과 형집행 관련 공문이 2~3건 정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종신이나 정역종신 가운데 정치범의 경우 유배지 변경 등에 따른 처리공문으로 한 사건 당 5~6건 이상의 기안을 찾아볼 수 있다.

24) 『刑事局起案』 第33冊, 光武 2年 9月 28日. 범죄인의 공초 내용을 보면, 김순철은 공초에서 5월에 이웃에 사는 홍가가 죽자 이사룡이 그의 부인을 겁탈했으며, 이후 동네의 연소배들이 작당하여 해당 과부를 겁탈해 왔다고 범행이유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부 <기안>에 수록된 범죄 사례는 전체 범죄 중에서 유종신, 징역 종신 이상의 중죄나 그 외에 범행 정상이 형량을 경감할 만하여 범부의 조율을 원할 때, 아편범죄와 같이 법률적용상 擬議가 생기는 경우, 법률적용이 애매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기안>소재 범죄의 경우 실제 발생한 범죄건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문건을 통해 해당 시기 전체 범죄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무개혁 전후의 범죄양상 및 범죄인의 처리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기안>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때 주로 이용되는 것이 공식적인 범죄통계 자료이지만, 개항기 이후 전체적인 범죄 양상을 기록하거나 범죄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 범죄 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전혀 살펴볼 수 없다.

이러한 자료적 상황에서 <기안>은 1896년부터 1906년까지 범부에서 파악한 범죄를 시기별 누락 없이 시계열성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범죄가 발생한 지역, 범죄인의 성명, 살육 범죄일 경우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원인(實因), 범죄인의 심리와 판결, 사건의 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범죄 관련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까지는 살펴볼 수 없지만, 정치범을 비롯하여 유품관리들의 수뢰, 횡령, 각종 폭력범죄, 경제범죄, 사회범죄 등 중범죄양상에 대해서 약 90% 이상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기안>은 중범죄의 시기별 추이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효과적인 자료라고 파악된다.

간범 한성천은 김순철의 요청으로 洞民이 일제히 모여 과부를 겁간하려 갈 때에 함께 내왕했다고 하며, 손접춘은 야간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 문을 나와 보니 동민이 과부를 위협하여 김순철의 배우자로 삼는 것을 따라가서 관광한 것 뿐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

II.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의 실태와 유형

본 논문에서는 총 11,197건의 <기안> 가운데 범부에서 한성부재판소로 발송한 사건 및 범죄인 관련 공문 1,194건, 경무청 발송 456건, 내부 및 외부 발송 301건,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발송 1,790건 등 3,741건의 공문가운데 한성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조율 및 처결에 관한 470건의 공문을 추출하였다. 이들 기안 안에는 동일한 사건 내 범죄인들의 조율과정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 기안에 여러 사건에 대한 범죄인 심리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70건의 조율 공문에서 506건의 한성부 범죄를 추출하였다. 범죄의 산출 근거는 고등재판소에서 심리한 고위관리 범죄와 국사범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으며,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 범죄는 관련된 범죄자들 개개인마다 범죄건수를 산출하지 않고 元犯 1인을 기준으로 범죄도 1건으로 기록하였다.²⁵⁾

【표 5】는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를 시기별,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범죄를 현대 형법체계에 따라 국가, 개인, 사회적 법익의 범죄로 분류했으며, 이를 다시 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뇌물수수와 횡령, 난언이나 邪術, 국가기관의 亂入, 越城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법익은 개인의

25) 범죄건수는 범부에서 보낸 공문 가운데 범죄인의 조율과 형집행 문서를 토대로 추출한 것으로, 범죄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즉, 3인이 함께 공모하여 절도행위를 할 경우, 범죄인은 3명이지만 범죄발생은 1건이므로 이런 경우 절도 1건으로 데이터화하였다.

인격과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강도, 구타 및 상해, 강간 등의 폭력범죄, 개인의 재산탈취나 재물거래를 악용하는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 등이 나타난다.

사회적 범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범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공안을 해치는 죄로는 방화, 실화 등이 있으며,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는 위조와 관련된 것으로 통화, 문서, 인장위조 등이 있다.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는 아편매매, 흡연 등이, 사회도덕에 대한 죄는 분묘 발굴, 금송, 예장례 방해 등이 있다.²⁶⁾

【표 5】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의 시기별, 유형별 분류

| 범죄 시기 | 국가적범익 | | | | 개인적범익 | | | | | | | 사회적범익 | | | | | | 합계 | |
|----------|------------------|------------------|----------------------------|--------|------------------|--------|--------|------------------|--------|--------|--------|------------------|------------------|--------|--------|--------|--------|----|--------|
| | 난 언 사 술 | 수 뢰 횡 령 | 직 무 남 용 유 기 | 견 실 | 난 입 월 성 | 무 고 | 강 간 | 강 도 적 도 | 살 육 | 구 타 | 절 도 | 사 기 도 박 | 방 화 실 화 | 굴 종 | 금 송 | 아 편 | 위 조 | | 기 타 |
| 1896 | 1 | 1 | 5 | 0 | 0 | 3 | 0 | 20 | 7 | 4 | 16 | 1 | 1 | 5 | 2 | 0 | 4 | 3 | 73 |
| 1897 | 1 | 3 | 1 | 3 | 3 | 1 | 2 | 7 | 6 | 4 | 9 | 5 | 1 | 12 | 2 | 1 | 4 | 4 | 69 |
| 1898 | 2 | 1 | 2 | 0 | 1 | 0 | 2 | 5 | 7 | 1 | 7 | 1 | 2 | 1 | 0 | 6 | 3 | 3 | 44 |
| 1899 | 1 | 4 | 2 | 4 | 2 | 1 | 0 | 3 | 4 | 5 | 10 | 1 | 4 | 2 | 0 | 1 | 2 | 5 | 51 |
| 1900 | 1 | 0 | 0 | 0 | 0 | 1 | 0 | 2 | 2 | 1 | 7 | 0 | 2 | 1 | 0 | 0 | 0 | 1 | 18 |
| 1901 | 0 | 1 | 1 | 0 | 3 | 1 | 1 | 3 | 4 | 2 | 14 | 0 | 3 | 2 | 0 | 0 | 11 | 3 | 49 |
| 1902 | 0 | 0 | 1 | 0 | 0 | 1 | 0 | 16 | 4 | 2 | 11 | 2 | 0 | 2 | 3 | 0 | 8 | 0 | 50 |
| 1903 | 0 | 0 | 0 | 0 | 0 | 0 | 0 | 3 | 5 | 0 | 0 | 0 | 1 | 2 | 2 | 0 | 1 | 0 | 14 |
| 1904 | 0 | 0 | 0 | 0 | 0 | 0 | 1 | 14 | 2 | 0 | 19 | 0 | 0 | 0 | 1 | 0 | 3 | 2 | 42 |
| 1905 | 1 | 1 | 2 | 0 | 0 | 0 | 0 | 14 | 5 | 4 | 11 | 1 | 1 | 0 | 0 | 0 | 4 | 1 | 45 |
| 1906 | 1 | 0 | 0 | 0 | 0 | 0 | 1 | 18 | 2 | 3 | 13 | 3 | 0 | 1 | 1 | 2 | 4 | 2 | 51 |
| 합계 | 8 | 11 | 14 | 7 | 9 | 8 | 7 | 105 | 48 | 26 | 117 | 14 | 15 | 28 | 11 | 10 | 44 | 24 | 506 |

26) 李在祥, 2004, 앞의 책, 5쪽.

【표 5】에 따르면 법부는 연간 약 46건에 해당하는 한성부 형사범죄를 조율하였다. 국가적 법익관련 범죄가 49건, 개인적 법익 325건, 사회적 법익 132건으로, 개인의 인격 및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전체 506건 가운데 64%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도 및 적도가 105건을 차지하였다. 이들 두 범죄유형은 개인적 법익 범죄의 68.5%를 차지하였으며, 한성부 전체범죄의 44%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살육과 위조가 각각 48건, 44건을 차지하였다.

시기별로는 1896년과 1897년이 각각 73건, 69건으로 많은 반면, 1900년과 1903년은 각각 18건, 14건으로 다른 시기보다 3~4배 정도 적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의 경우 전 시기인 1899년보다 수뢰횡령, 직무남용, 건설 등 국가적 법익 사건의 조율이 13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으며, 사회적 법익인 방화, 실화, 굴충, 아편, 위조 등의 조율이 15건에서 4건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1903년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강도와 절도의 조율이 총 3건으로 다른 시기가 평균 22건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강도 및 절도 등의 중범죄의 경우 전체 발생률의 약 90%가 <기안>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률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율 문건에 나타난 한성부 범죄의 특징을 보면, 먼저 재산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896년의 경우 전체 73건의 조율공문 가운데 55%인 40건이 강도 및 적도, 절도, 위조 등의 재산범죄였다. 재산범죄의 비율은 시기마다 증감은 있었지만 1896년 55%, 1897년 29%, 1898년 34%, 1899년 29.4% 등 평균 42.3%의 비율이었다. 이러한 양상이 1899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01년 57%, 1902년에는 강적도 16건, 절도 11건, 위조 8건 등 재산범죄가 70%를 차지하였고, 1904년에는 전체 조율문건 42건 가운데 36건인 85.7%로 1899년도에 비해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1905년과 1906년에는 각각 64.4%, 67.3%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부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지역과 달리 강도 및 적도, 절도, 위조 등 재산범죄가 많이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범죄의 형량이 징역 중신 이상이며, 이 경우 전체 발생률의 약 90%가 기안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률이 많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재산범죄의 양상을 보면, 한성부 강도 이성택은 전농 객주 김보민 집에 가서 別銀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칭하고 거간인 장진국과 함께 벌은 20냥을 휴대하고 가다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매장하였다. 이성택이 강도행위를 한 이유는 돈을 탈취하여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였다.²⁷⁾ 1898년 이춘성과 김용득은 한홍선과 함께 옹막에 거주하는 해주주인 오위장 박가의 집을 밤을 틈타 뛰어넘어 돌로 그 집의 낭속을 위협하고 100냥을 탈취하여 분장하였으며, 이후에도 공덕리 신촌과 西湖에 사는 부잣집을 육혈포로 위협하고 돈 껌을 탈취한 후 2,500냥씩 분급하기도 하였다.²⁸⁾

富家뿐 아니라 관청이 적도에 의해 침탈당하기도 하였다. 1896년 남서 회동과 창동에 거주하는 이태석, 김양녀, 권충경, 최석주 등 적도 10여명은 칼을 가지고 김우현을 따라 탁지부 米廩課에 난입하여 수직 관리와 하인을 묶어서 잡아 가둔 다음 열쇠를 빼앗아 창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는 은화 7,790원 95전을 탈취하였다.²⁹⁾

강도 및 적도의 증가는 비단 한성부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한탕주의를 노리는 백성들이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4, 5명씩 무리를 지어 적도를 이루거나 강도짓을 하며 민가의 재산을 침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더욱이 강적도 및 절도의 극성은 ‘굴총도적’이라는 변종 범죄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굴총은 조상을 길지에 안장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 19세기 이후 도적들에 의해 부호들의 재물

27) 『刑事局起案』 第10冊, 建陽 元年 9月 11日.

28) 『刑事局起案』 第26冊, 光武 2年 1月 31日.

29) 『檢事局起案』 第12冊, 建陽 元年 10月 16日.

을 강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타인의 무덤을 판 후 시체를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굴충도적’으로 변모되었는데,³⁰⁾ 서울 서서 합동에 사는 한치교는 살곳이 근처에 있는 선산이 도적에게 굴충을 당한 후 돈 5천냥을 요구받자, 돈을 주고 해골을 찾아오기도 하였다.³¹⁾

절도범에 대한 법부의 조율은 1903년 0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10건의 꾸준한 조율 건수를 보였다. 북한산 화약고에서 화약을 훔쳐 판 고군 김명원은 飢寒을 참지 못하고 지점돌, 백창억, 현원근, 우순철 등의 껌에 빠져 북한 대남문 안 화약고에서 화약 100근을 투출하여 140냥을 받고 매매하였으며, 이들은 전에도 150근을 투출하여 함께 방매하여 나누어 가졌다.³²⁾ 아현에 사는 방동운, 서성인, 이준학 등은 동문 밖에 함께 가서 전기 철도 銅線 105근을 절취하여 김봉현에게 엽전 168냥을 받았으며, 10월에는 다시 동선 59근을 절취, 아현에 사는 송홍원에게 엽전 94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후 3번째 전선을 절취하여 짊어지고 어청교를 지나다가 순검에게 피착당하였다. 특히 이들은 순검에게 잡혀 수색을 당할 때 鑄錢판 4개가 함께 발견되어 동전을 위조하려고도 했음을 알 수 있다.³³⁾

이처럼 재산범죄가 증가하자, 경무청에서는 도적을 맞은 사람이 잃은 물건을 기록하여 경무관에게 고하면 해당 경무관은 이를 살피 도적을 잡게 하였으며, 도적을 맞은 해당 동리의 경무관을 문책하였다. 내부 또한 강·절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사무를 실심으로 시행하게 할 뿐 아니라, 상인들이 귀중품을 운반할 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순검 1,

30) 송주식의 5명의 도적은 부산항에 사는 이상훈의 父塚을 파서 돈을 요구하다 출동한 순교들에게 붙잡히기도 하였다(『司理局起案』第2冊, 光武 3年 7月 28日). 1908년에는 도적이 공주군에 사는 김적수의 親山을 굴충하여 시체의 머리를 가지고 간 후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7일, 잡보, 3면) 굴충을 이용하여 양반이나 부민들에게 돈을 토색하는 적도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31) 『독립신문』, 1899년 1월 6일, 잡보, 4면.

32) 『刑事局起案』第32冊, 光武 2年 7月 7日; 『刑事局起案』第38冊, 光武 3年 1月 31日.

33) 『司理局起案』第3冊, 光武 3年 8月 15日.

2인씩을 별도로 파송하여 도적이 창탈하는 우환을 면하게 해 주라고 각도 관찰사에게 훈칙하였다.³⁴⁾ 보상정책도 실시하여 일반 민이라도 도적을 잡은 경우 경무청에서 상금을 주도록 하였다.³⁵⁾ 당시 신문의 잡보가 모두 비도, 적도에 관한 사항이었음을 볼 때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위조가 44건이나 조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방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위조범죄의 발생 추이는 19세기의 양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순조대의 경우 34년 동안 21건이, 헌종대에는 6건, 이후 점점 더 감소하여 철종대에 이르면 위조행위는 4건으로 나타났다.³⁶⁾ 이러한 양상은 1896~1906년간 총 44건으로 조율 문건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1901년과 1902년은 다른 시기보다 3~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18세기와 달리 불법 사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위조 조율 문건 44건 가운데 50%인 22건이 사주죄인에 관한 것이었다. 사주죄인의 경우 사주를 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반면, 사주전을 진짜 동전으로 바꾸려다가 경무청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남서 공동에 사는 유창연은 이경철의 부탁을 받고 남양군에 사는 홍경필을 소개하였고, 이경철은 약을 만든다는 구실로 최병희의 집 한칸을 빌려 동전을 시험 삼아 주조하다가 피착되었다.³⁷⁾ 서서 약현에 거주하는 鑪器匠 김수현은 남서 필동에 사는 동료 이행백과 함께 당오전을 3차례 만든 후 안성군에 내려가 사주전으로 물건을 사려다가 붙잡혔으며,³⁸⁾ 지방에서 상경한 이우성은 경성에서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다가 사주의 꾀임에 빠

34) 『독립신문』, 1897년 11월 20일, 잡보, 3면.

35) 『독립신문』, 1896년 10월 13일, 잡보, 2면.

36) 유승희, 2008, 「18~19세기 한성부 경제범죄의 실태와 특징-사죄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1, 133~134쪽.

37) 『刑事局起案』 第29冊, 光武 2年 4月 12日.

38) 『刑事局起案』 第34冊, 光武 2年 9月 14日.

저서 조역한 죄를 받았다.³⁹⁾

그 밖의 위조행위로 배재학당의 학생 김상호는 황제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명례궁으로부터 3만 5천 냥을 받아내려 하였으며,⁴⁰⁾ 이희용은 한성부 家契板을 위조한 죄로 붙잡히기도 하였다⁴¹⁾

셋째, 수뢰와 횡령, 난입, 월성 등 국가적 법익관련 범죄에 대한 법부의 조율은 1897년과 1899년 두 시기에 두드러졌다. 전체 국가적 법익범죄 49건 가운데 24건인 49%가 이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돈의문 밖 집으로 가기 위해 밤에 도성을 넘다가 붙잡힌 정용삼,⁴²⁾ 엄귀인을 입건하려고 러시아 공관 후문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한성녀,⁴³⁾ 현릉 한식제 제물을 건실한 현릉 경서원과 현릉군들에 대한 처벌,⁴⁴⁾ 영선사 실화,⁴⁵⁾ 어선소에 멋대로 들어간 한춘식, 이인식의 조율⁴⁶⁾ 등이 그 사례이다.

이와 함께 감옥서 탈옥죄수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1897년 심모범, 황우정, 손춘홍 등 징역죄인 5명이 순검에게 軍刀를 탈취하여 관리를 살해하고 도망하였으며,⁴⁷⁾ 살육죄인 김형순은 차고 있던 칼을 부수고 탈옥하였다.⁴⁸⁾ 순검과 동조하여 탈옥하는 경향도 볼 수 있으며, 압송하던 도중에 죄수를 건실하기도 하였다.⁴⁹⁾ 당시의 죄수관리의 허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었다.

39) 『司理局起案』 第19冊, 光武 6年 3月 28日.

40) 『司理局起案』 第13冊, 光武 5年 3月 9日; 『司法稟報』 乙 21책, 보고서 제38호.

41) 『司理局起案』 第18冊, 光武 5年 11月6日; 『司法稟報』 乙 32책 질품서.

42) 『刑事局起案』 第19冊, 光武元年 6月 3日.

43) 『刑事局起案』 第26冊, 光武 2年 1月 18日.

44) 『刑事局起案』 第42冊, 光武 3年 5月 10日.

45) 『刑事局起案』 第42冊, 光武 3年 5月 22日.

46) 『刑事局起案』 第41冊, 光武 3年 4月 11日.

47) 『檢事局起案』 第14冊, 建陽 2年 1月 22日.

48) 『司理局起案』 第2冊, 光武 3年 7月 21日.

49) 『檢事局起案』 第14冊, 建陽 2年 3月 8日.

넷째, 신흥범죄 및 외국인 관련 범죄가 전시기와 달리 등장하였다. 신흥범죄로는 아편범죄인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아편의 수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판매 또한 금지하였다. 외국과의 상호 조약에 있어서 조선은 중국과는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해서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⁵⁰⁾ 일본과도 또한 아편을 항구에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아편을 몰래 운반하거나 운반하려고 시도했을 때에는 그 화물을 몰수하고, 아편 1근마다 7천문의 벌금을 징수하였다. 다만, 조선 정부에서 사용하거나 일본 거류민들이 약을 만들 목적으로 일본 영사관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항구에 들여온 경우는 예외였다.⁵¹⁾

그러나 시기가 지날수록 아편에 대한 금령이 해이해지자 1894년 아편을 피우는 것은 물론 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금령을 다시 엄격하게 강조하되 법무아문에서 따로 금지 조항을 정하여 민간에 공포하도록 하였다.⁵²⁾ 실제 <형명부>에 나타난 한성부 아편 범죄인의 경우 1897년 1명에서 1898년 6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것이 1905년에는 12명, 1906년에는 37명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후 아편 흡연자들은 계속 발생하여 1925년에 이르러서는 경기도 위생과에 아편 중독자 치료소가 설치될 정도였다.⁵³⁾

한편, 살인이나 구타 및 절도행위에서 외국인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성부의 경우 살육에 관한 법부의 조율은 전체 범죄의 약 10%에 지나지 않았다.⁵⁴⁾ 이는 지방재판소로 발송하는 기안 가

50) 『고종실록』 권19, 고종 19년 10월 17일.

51) 『고종실록』 권20, 고종 20년 6월 22일.

52)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8월 6일.

53) 『순종실록부록』 권16, 순종 18년 7월 15일.

54) 법부가 지방재판소로 발송하는 조율공문의 대부분은 살인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황해도는 범죄 225건 가운데 71.5%인 161건이 살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함경도

운데 80% 이상이 살육과 관련된 공문이라는 점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특히 살육이나 구타사건에서 전 시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개항 이후 외국인과의 대립이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살인이나 구타라는 범죄행위로 표출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개항과 함께 조선은 외국인의 거주 및 그들의 상업 활동을 허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과의 화응이나 분쟁이 많았다. 조선인 가운데 일부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일본인과 부동하여 蔘圃위원의 勿禁帖을 빙자하고 삭녕, 춘천 등지에서 몰래 인삼을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였다.⁵⁵⁾ 한성부 竹洞에 사는 진사 최상현과 眞洞에 사는 司果 유기동 등은 永平 物隱潭 장사에서 日人 謙吉 등 56인과 수삼을 매매하기 위해 경기 삼포위원의 물금첩을 빙자하여 포삼을 매매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수삼잠재의 금령을 위반하는 자들의 색출과 외국인과 체결하여 멋대로 삼채를 행하여 매삼하는 자들의 단속을 강화하였다.⁵⁶⁾

또한 조선인과 외국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인 김안학이 조선인 순검 박춘식을 구타하였으며,⁵⁷⁾ 러시아인 3명이 집단으로 순검 임순엽을 구타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러시아인 김병렬이 이유 없이 역군 등에게 구타당할 때 조선 순검 임순엽이 그 자리에서 보고서도 제지를 하지 않자, 동료 러시아인들이 이를 듣고 분기하여 임순엽을 구타하였다.⁵⁸⁾

강도죄인 임복만은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일본인 여인을 살해하였으며,⁵⁹⁾ 경기 수원에 사는 전기석은 서울 夜照峴 일본인 상인 집에서

또한 72.1%가 살인사건으로 황해, 함경, 평안도 등지의 경우 적도나 절도 사건보다는 살인사건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55) 『檢事局起案』 第4冊, 開國 3年 8月 15日: 『檢事局起案』 第4冊, 開國 3年 8月 16日.

56) 『檢事局起案』 第4冊, 開國 3年 8月.

57) 『檢事局起案』 第17冊, 建陽 2年 6月 29日.

58) 『檢事局起案』 第17冊, 建陽 2年 6月 25日.

59) 『司理局起案』 第25冊, 光武 8年 3月 14日.

권련 한 상자를 훔치다가 피착되었다.⁶⁰⁾ 신귀들은 러시아 공사가 동문밖 탐동 僧房에서 며칠 유숙할 때 임시사환으로 청소부를 하다가 러시아 공사의 가방을 훔쳐 경무청으로 이송되었다.⁶¹⁾

이상과 같이 조율 문건에 나타난 한성부 범죄 양상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리 폭력범죄의 양상보다는 재산범죄의 비율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1896년~1906년 동안 재산범죄의 비율은 전체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00년대에는 평균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재산범죄의 증가는 재산 기반이 취약한 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재물을 얻고자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절도나 강도 등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 사주의 방식으로도 표출되었다. 한편, 아편범죄의 조율이 급증함에 따라 공중 보건이 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살인이나 구타의 폭력행위 및 절도 등의 범죄행위에서 외국인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타나 조선인과 외국인 간의 대립, 갈등이 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인의 양상

1. 한성부 범죄인의 지역적 특성

앞의 【표 5】에서 보았듯이 범부 <기안>에 기록되어 있는 한성부 범죄건수는 506건으로, 그 가운데 <형명부>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범죄인은 425명이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한성부재판소에서 작성한 <형명

60) 『司理局起案』 第9冊, 光武 4年 6月 16日.

61) 『刑事局起案』 第10冊, 建陽 元年 9月 15日.

부>에는 1895년부터 1908년까지 약 14년간 한성부 범죄인의 성명 및 거주지, 직업, 범죄유형, 형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약 3년간 범죄인 상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기도 1, 2개월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형명부>가 범죄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 <형명부>의 결함이 특정 지역의 범죄인을 과다하게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1901년에서 3년간 전 지역의 범죄인이 균일하게 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시기적 특성이나 시계열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범죄인의 지역적 실태나 직업양상, 여기에서 나타난 범죄유형 등 범죄인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형명부>에 기재된 한성부 범죄인 425명을 중심으로 당시 범죄인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6】 한성부 범죄인의 지역별 실태

| 지역 | 한성부 | | | | | | | | 8도 | | | | | | | | | 합계 |
|----|-----|----|----|----|----|-----|----|-----|-----|----|----|----|----|----|----|----|-----|-----|
| | 중서 | 동서 | 서서 | 남서 | 북서 | 무정처 | 미상 | 계 | 경기 | 강원 | 경상 | 전라 | 충청 | 평안 | 함경 | 황해 | 계 | |
| 합계 | 26 | 45 | 55 | 68 | 27 | 5 | 8 | 234 | 110 | 10 | 14 | 1 | 22 | 14 | 6 | 14 | 191 | 425 |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형명부>에 나타난 한성부 범죄인은 한성부민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성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45%가 8도의 민이 상경하여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방민 가운데 한성부 인근지역인 경기도민의 범죄행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면 지방 범죄인 191명 가운데 110명(57.6%)이 경기도민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농민과 평민, 상인으로 주로 강도, 절도로 인해 경무청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다.⁶²⁾ 경기도민이 저지른 한성부 범죄 중 62.7%인 69건이 강도 및 적도, 절도 행위였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지방민의 경우에서도 유사하였다. 충청도 범죄인 22명 가운데, 강도 및 절도를 범한 사람이 12명으로 54.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0명은 기물파손, 위조, 굴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평안도는 총 범죄인 14명 가운데 강, 절도를 저지른 범죄인이 12명으로 86%였으며, 황해도의 경우 14명 가운데 11명이, 경상도는 14명 가운데 7명이 강, 절도범이었다. 한성부가 강원 및 평안, 전라, 경상, 충청 등지보다 강, 절도 건수가 117건(【표 5】 참조)으로 집중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상경 지방민들의 강, 절도 행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⁶³⁾

절도재범자인 최영식은 평양에서 상경하는 중에 박치헌을 만나 함께 서울로 올라와 美洞에 사는 김선달집에 머물다가 박가의 명주 3필과 호박 패물 등을 훔쳤으며,⁶⁴⁾ 평양에 거주한 박순만은 상경하여 절도죄로 1년 반 정도 복역한 후 다시 1년 만에 절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⁶⁵⁾ 서울에서 모군으로 일하고 있는 경기 안성인 이원명과 동서 동문에 거주하는 박만홍 등은 함께 각처를 돌아다니며 재산을 탈취하는 강도짓을 행하였다.⁶⁶⁾ 또한 철로 역부로 일하는 경상도민 조치운은 철로 역부 모집 차 일본철로 감부 표지를 가지고 정성일과 함께 학동에 갔다가 해당 동민과 싸워 구타당했으며, 이에 동료 정성일이 조선인과 일본인 역부 수십 명을 거느리고 와서 조치운을 구타한 동민들을 역부회사로 끌고 가 감금한 죄를 받았다.⁶⁷⁾

62) 경기도 출신 한성부 범죄인의 직역현황을 보면 전체 110명 가운데 농민이 53명, 상인이 13명, 평민이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고공 및 모군, 승도, 양반 등의 직역을 가진 범죄인이 나타나고 있다.

63) 법부의 조율문건을 통해 각 지방의 절도 건수를 보면, 강원 및 평안은 각 3건, 전라 7건, 경상 16건, 충청 13건 등 평균 7건인데 반해, 한성부는 117건이나 발생하고 있어 재산관련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64) 『司理局起案』 第9冊, 光武 4年 6月 4日.

65) 『司理局起案』 第18冊, 光武 5年 11月 13日.

66) 『刑事局司理課起案』 第2冊, 光武 10年 5月 8日.

67) 『刑事局司理課起案』 第3冊, 光武 10年 10月 17日; 『司法稟報』 乙 51책, 질품서 제

위의 사례처럼 지방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도시인 한성부로 올라온 계층들이었다. 뒤의 【표 7】에서 보듯이 이들은 대개가 농민이나 평민이었다. 하지만 지방민의 서울 생활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약탈하거나 훔치는 강도 및 절도행위를 행하였으며, 일부는 적도를 이루며 민가의 재산을 침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민의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한성부의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성부에 거주하는 범죄인의 실태는 어떠한가. 한성부 거주 범죄인의 경우 그 지역적 연고를 알 수 있는 범죄인은 거처가 없거나 알 수 없는 13명을 제외한 221명이었다.

【표 7】 한성부 5서의 범죄율

| 지역 | 한성부 | | | | |
|--------|-----|------|-----|------|-----|
| | 중서 | 동서 | 서서 | 남서 | 북서 |
| 범죄인수 | 26 | 45 | 55 | 68 | 27 |
| 인구당범죄율 | 9.6 | 11.5 | 8.5 | 10.2 | 7.7 |

5췌 가운데 남서가 68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서가 55명, 동서가 45명, 북서와 중서가 각각 27명, 26명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초와 유사한 지역적 실태를 보이는 것으로, 남서와 서서가 한성부 5서 중 거주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1907년 한성부의 호구는 중서가 한성부 전체 인구의 11.5%인 26,853구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한 반면, 서서와 남서는 각각 64,887인, 67,338인으로 50%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였다.⁶⁸⁾

132호.

68) 인구당 범죄율은 범죄인수를 각 도별 인구 백명 단위에서 반올림한 수로 나눈 수이다. 이 시기 한성부의 호구를 1907년 한국호구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범죄율을 통해 5서의 범죄현황을 보면 동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북서가 범죄율이 가장 낮은 안전한 지역이었다. 18~19세기 한성부의 범죄율이 북서가 높았던데 비해⁶⁹⁾ 1896~1906년에는 동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서의 경우 統內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동대문, 동소문 밖이나 이교, 왕십리 등지도 주요 우범지역이었다. 범죄인의 대부분은 간통 5인, 살육 2인을 제외하고는 38인이 모두 강도 및 적도, 절도 행위를 하다 붙잡힌 자들이었다.

남서와 북서는 5서 가운데 위조범죄인이 가장 많았으나, 위조 대상은 지역에 따라 큰 차를 보였다. 남서의 경우는 목동, 필동이 주요 지역으로 사주전 죄인들이 많았으며, 북서의 경우는 두동, 관현, 계동을 중심으로 어보나 아문의 인신을 위조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는 북서가 궁궐과 중앙 관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범죄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범피지역을 보면 남서의 경우 창동, 초동, 명동, 필동 등지에서, 중서는 사동, 교동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다. 북서의 경우는 계동, 삼청동, 장동, 창의문 등이며, 서서의 경우는 용산, 약현, 아현, 신문주변, 서

| 지역 호구 | 호수 | | 인구수 | |
|----------|----------------|-----------------|----------------|-----------------|
| | 호구총수 (1786) | 한국호구표 (1907) | 호구총수 (1786) | 한국호구표 (1907) |
| 중서 | 4,082 | 6,384 | 20,186 | 26,853 |
| 동서 | 7,702 | 9,277 | 29,710 | 39,166 |
| 서서 | 16,371 | 15,284 | 68,194 | 64,887 |
| 남서 | 9,970 | 16,764 | 46,784 | 67,338 |
| 북서 | 5,804 | 8,420 | 24,279 | 34,850 |
| 합계 | 43,929 | 56,129 | 189,153 | 233,094 |

69) 18~19세기 한성부 범죄통계에 있어서는 서부가 다른 지역보다 3배 정도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수 대비 범죄율을 살펴본 결과 오히려 서부보다 북부가 2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부가 22.5건이었다. 반면, 서부는 21건, 동부는 19.3건이었다. 이에 비해 남부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13.8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5부 가운데 제일 안정된 지역이었다(유승희, 2007, 18~19세기 한성부의 범죄실태와 갈등양상, 서울시립대박사학위논문, 98~99쪽).

소문, 남문 주변이었다. 한성부 5서에서 공통된 특징은 4대문 주변이 범죄인의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그 가운데 남문 주변은 가장 주요한 우범지역이었다. 남대문 밖 청학정의 경우 밤이면 도적들이 은신하였다가 동리에 내려와서 도적질을 자행하여 국가에서는 경무청으로 하여금 살피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⁷⁰⁾ 남문 안 선혜청의 경우는 도적 10여명이 칼을 가지고 돌입하여 관원과 하인들을 결박한 후 은전을 훔쳐 달아나기도 하였다.⁷¹⁾ 이 밖에 서강 농바우와 광흥창 근처는 잡기하는 무리와 줌도적들이 심하여 가난한 백성의 집에 물건을 잃은 일이 빈번하였다.⁷²⁾

2. 한성부 범죄인의 직역과 범죄양상

다음으로 범죄인의 직역과 범죄양상을 살펴보자. <형명부>에 나타난 범죄인들의 경우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이후지만, 종래의 신분을 표기하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생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즉 <형명부>에 나타난 범죄인의 직역은 전통적인 신분분류와 구체적인 생업이 혼종해서 나타났다. 양반신분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士人, 儒業, 進士, 參奉 등으로 기재된 반면, 일반 양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비롯하여 농민, 평민, 상인 등으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범죄인의 직업분류는 크게 일반양반, 관리, 관청근무자, 농민, 상인 및 수공업자, 평민, 일용노동자, 하급군병, 無業 및 流丐,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관리는 전·현직의 관직, 군직 등을, 관청근무자는 使令, 庫直, 雇員 등 관청에서 정식으로 급료를 지급받는 군역보유

70) 『독립신문』, 1896년 9월 29일, 잡보, 2면.

71) 『檢事局起案』第12冊, 建陽元年 10月 16日; 『독립신문』, 1896년 10월 13일, 잡보, 2면.

72) 『독립신문』, 1896년 9월 24일, 잡보, 2면.

자가 포함되었다. 또한 하급군병에는 현역 및 퇴역병정, 배설군사, 수군, 급수군 등이, 일용노동자에는 모군, 고군, 고용, 고공 등이 포함되었다. 농민과 평민은 <형명부>에 기재된 범죄인의 직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기타로는 학생, 승려, 기녀, 의사, 車夫 등이 포함되었다.

한성부 범죄인의 직업별 분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한성부민과 향촌민의 직역차가 분명했다는 점이다. 한성부 거주 범죄인의 경우 상인 및 수공업자의 범죄가 65건으로 가장 두드러진 반면, 한성부내 향촌 범죄인의 경우 많은 수가 농민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역으로 한성부 거주민의 직업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향촌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한 반면, 한성부는 조선시대부터 도성내 경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상인 및 수공업자가 주요 직업층을 이루고 있었다. 한성부내 범죄인 중 농민이 10명으로 적은 것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표 8】 직업에 따른 한성부 5서별 범죄인 분류

| 지역 | 직업 | 양반 | 관리 | 관청 근무 | 하급 군병 | 농민 | 평민 | 상인 및 장인 | 일용 노동 자 | 무업 및 유개 | 기타 | 미상 | 합계 |
|-----|----|-----|----|----------|----------|----|----|---------------|---------------|---------------|----|----|-----|
| | | 한성부 | 중서 | 0 | 1 | 2 | 3 | 1 | 3 | 7 | 6 | 1 | 2 |
| | 동서 | 0 | 0 | 0 | 4 | 6 | 5 | 19 | 8 | 2 | 0 | 1 | 45 |
| | 서서 | 2 | 2 | 5 | 3 | 1 | 4 | 15 | 11 | 3 | 2 | 7 | 55 |
| | 남서 | 2 | 0 | 0 | 2 | 1 | 16 | 16 | 14 | 5 | 4 | 8 | 68 |
| | 북서 | 0 | 3 | 5 | 3 | 1 | 3 | 7 | 2 | 0 | 1 | 2 | 27 |
| | 미상 | 0 | 0 | 1 | 1 | 0 | 1 | 1 | 2 | 4 | 2 | 1 | 13 |
| | 소계 | 4 | 6 | 13 | 16 | 10 | 32 | 65 | 43 | 15 | 11 | 19 | 234 |
| 8도민 | | 5 | 4 | 3 | 13 | 68 | 23 | 27 | 18 | 3 | 10 | 17 | 191 |
| 합계 | | 9 | 10 | 16 | 29 | 78 | 55 | 92 | 61 | 18 | 21 | 36 | 425 |

둘째, 재산 기반이 취약한 일용노동자 및 무업, 유개자 등의 범죄가

58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서와 남서에 집중되었다. 일용노동자 및 무업자의 범죄는 서서와 남서가 각각 14건, 19건으로 이들 전체 범죄의 57%가 두 지역에서 발생한 반면, 북서는 단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셋째, 한성부 거주 범죄인의 직업을 통해 5서별 범죄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동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농민의 범죄행위가 6배 정도 많은 반면, 서서와 남서의 경우는 양반과 상인, 일용노동자의 범죄행위가 많았다. 특히 상인 및 수공업자 범죄인의 경우 시전상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중서와 달리 남서, 서서, 동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상인의 범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서와 북서의 경우 관리나 관청근무자의 범죄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졌다. 전체 19명의 범죄인 가운데 79%인 15명이 북서와 남서에 거주한 자들이었다. 관청근무자들의 경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실화하거나 화약이나 능의 제물을 견실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범죄인들의 연령층을 살펴보자. 【표 9】는 범죄인의 연령층과 범죄유형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으로, 크게 15세 미만, 15세 이상 60세 이하, 61세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범죄인은 다시 5세마다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범죄인이 많은 연령대는 26세 이상 30세 이하로 91명(24%)이 확인되며, 21세 이상 25세 이하가 78명, 31세 이상 35세 이하가 73명이다. 전체 범죄인 425명 가운데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장년층이 242명으로 5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범죄인의 연령층은 매우 중요한 사회학적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연령이 달라짐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특성은 물론 사회참여도, 범죄행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등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범죄인들은 주로 강도, 적도, 절도 등의 재산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강도·적도범의 연령층은 21세에서 35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36세 이후부터 그 수는 반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절도는 20대 범죄인이 가장 많지만 30세 이후 50세까지 범죄인의 수가 일정한 지속성을 보였으며, 그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강도, 적도, 절도 등의 경우 청장년층에 집중된 범죄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기안〉 소재 한성부 범죄인의 연령별, 유형별 분류

| 범죄 유형 연령 | 국가적범의 | | | | | 개인적범의 | | | | | | 사회적범의 | | | | | 합계 | |
|-------------|-------|------|---------|----|------|-------|----|------|----|----|-----|-------|------|----|----|----|----|-----|
| | 난언사술 | 수뢰횡령 | 직무남용·유기 | 건설 | 난입월성 | 무고 | 강간 | 강도적도 | 살육 | 구타 | 절도 | 방화실화 | 사기도박 | 굴총 | 아편 | 위조 | | 기타 |
| 15세미만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3 | 0 | 0 | 0 | 0 | 0 | 0 | 4 |
| 16~20세 | 0 | 0 | 1 | 0 | 0 | 0 | 0 | 9 | 0 | 1 | 15 | 0 | 0 | 0 | 2 | 1 | 0 | 29 |
| 21~25세 | 2 | 0 | 0 | 0 | 1 | 0 | 2 | 26 | 1 | 0 | 37 | 1 | 2 | 1 | 1 | 2 | 2 | 78 |
| 26~30세 | 0 | 2 | 0 | 0 | 0 | 1 | 0 | 31 | 9 | 7 | 26 | 1 | 0 | 2 | 2 | 8 | 2 | 91 |
| 31~35세 | 1 | 0 | 2 | 1 | 1 | 1 | 1 | 31 | 5 | 4 | 16 | 1 | 1 | 3 | 1 | 1 | 3 | 73 |
| 35~40세 | 1 | 0 | 1 | 0 | 0 | 0 | 3 | 16 | 2 | 3 | 16 | 0 | 0 | 0 | 1 | 6 | 3 | 52 |
| 41~45세 | 0 | 0 | 1 | 0 | 1 | 0 | 1 | 9 | 2 | 2 | 18 | 1 | 2 | 1 | 0 | 5 | 1 | 44 |
| 46~50세 | 0 | 0 | 1 | 0 | 1 | 1 | 0 | 3 | 3 | 0 | 2 | 1 | 1 | 3 | 0 | 4 | 1 | 21 |
| 51~55세 | 0 | 0 | 1 | 0 | 0 | 0 | 0 | 3 | 1 | 0 | 1 | 1 | 0 | 2 | 0 | 2 | 3 | 14 |
| 56~60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2 | 0 | 2 | 0 | 5 |
| 61세 이상 | 0 | 0 | 1 | 0 | 0 | 0 | 0 | 1 | 2 | 1 | 0 | 1 | 0 | 1 | 0 | 0 | 0 | 7 |
| 미상 | 0 | 1 | 0 | 0 | 0 | 0 | 0 | 2 | 3 | 0 | 0 | 1 | 0 | 0 | 0 | 0 | 0 | 7 |
| 합계 | 4 | 3 | 8 | 1 | 4 | 3 | 7 | 132 | 28 | 19 | 134 | 8 | 6 | 15 | 7 | 31 | 15 | 425 |

살육이나 구타 등 폭력범죄는 26세 이상 35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절도나 강도처럼 연령대의 급감율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굴충의 경우는 20대와 30대의 범죄인이 6명인데 반해 40대 이상이 9명으로 60%이상을 차지하여 노년층 범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위조의 경우는 26세 이상 30세 이하가 8명으로 가장 많지만, 반대로 35세 이상 45세 이하에서도 15명의 범죄인이 나오고 있고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4명이 나오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고른 연령층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한성부는 지역적으로 동서를 중심으로 4대문 주변이 주요 범죄인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범죄인의 경우 상경한 지방민에 의한 범죄행위가 45%를 차지하여 한성부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들은 대개 농민으로 한성부 거주 범죄인 대부분이 상인 및 수공업자였던 것과 극히 대조를 이루었다.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장년층이 57%를 차지하여 주요 범죄인층을 이루었으며, 이들은 강도, 적도, 절도 등의 재산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연령별 범죄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위조는 고른 연령층을 보인 반면, 강도, 적도, 절도는 청장년층에, 굴충은 노년층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법부 <기안>에 나타난 조율문건의 자료적 특징과 함께 여기에 소재되어 있는 1896년~1906년 한성부 범죄양상과 범죄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한국사회의 범죄량, 범죄인의 제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시기 범죄량을

알 수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도 없을 뿐 더러, 본고가 주 자료로 삼았던 법부 <기안>의 범죄통계 또한 기록된 범죄수치나 범죄 양상이 실제 발생한 범죄의 극히 일부분으로, 범죄현상의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법 집행기관의 활동 지표였기 때문이다.

<기안>에 수록된 범죄 사례는 전체 범죄 중에서도 유종신, 징역 종신 이상의 중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치범죄를 비롯하여 유품관리들의 수뢰, 횡령 등의 범죄행태, 각종 폭력범죄, 경제범죄, 사회범죄 등 중범죄양상에 대해서 90% 이상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법부 <기안>의 공식적인 자료가 이 시기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1896년~1906년 한성부 범죄현상에 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재산범죄가 한성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사회가 어려워지자 일반 백성들의 범죄 인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민의 일탈행위는 극심하였고, 개항이후 외제 품의 유입으로 만들어진 사치생활과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박탈감을 부추겨 많은 범죄를 발생하게 하였다. 1896년~1906년의 시기동안 법부에서 조율한 재산범죄의 비율이 전체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00년대에는 평균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상경한 타 지방민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한성부의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개항이후 한성부내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 내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만연되고 있던 국가권력과 지주층의 농민수탈은 농민 몰락과 이들의 토지 축출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노동자로서의 갈망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강도, 절도 등 재산범죄를 행하면서 자신들의 잠재적인 폭력성을 노출시켰다. 한성부 범죄인 가운데 45%가 8도의 농민이 상경하여 저지른 것이며, 그 중 57.6%가 경기도민이 행한 것이었다.

한성부가 지방보다 재산범죄가 집중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상경지방민들의 강, 절도 행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셋째, 한성부의 경우 5서 가운데 동서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적으로 4대문 주변이 범죄인의 밀집 지역이었다. 18~19세기 한성부의 범죄율이 북서가 높았던데 비해, 1896~1906년에는 동서로 바뀌었으며 북서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 동서 가운데에서도 統內, 동대문, 동소문 밖이나 이교, 왕십리 등지가 주요 우범지역이었다. 한성부의 주요 범죄지역을 보면 남서의 경우 창동, 초동, 명동, 필동 등지에서, 중서는 사동, 교동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다. 북서의 경우는 계동, 삼정동, 장동, 창의문 등이며, 서서의 경우는 용산, 약현, 아현, 신문주변, 서소문, 남문 주변으로, 5서의 공통된 특징은 4대문 주변이 범죄인의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그 가운데 남문 주변은 가장 주요한 우범지역이었다.

넷째, 한성부 주요 범죄인 계층은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연령으로, 상인 및 수공업자의 직역을 가진 자였다. 한성부 거주 범죄인의 경우 상인 및 수공업자의 범죄와 함께 재산 기반이 취약한 일용노동자 및 무업, 유계자 등의 범죄가 다른 직역보다 많았다. 또한 연령층과 범죄 유형의 상관성이 드러나 활동성을 요구하는 강도, 적도, 절도 등의 경우 20세 이상 30세 이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재산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위조의 경우는 26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범죄인이 파악되어 다른 범죄에 비해 고른 연령층을 보였으며, 굴총의 경우는 46세 이상 60대까지의 범죄인이 60%이상을 보여 노년층 범죄율의 주범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전환기 조선사회에서 드러나는 범죄를 시기별, 지역별로 계량화하여 이를 통해 유교 윤리에 의해 운영되던 조선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범죄 양상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이 시기 범죄의 특성과 범죄인의 실태는 어떠했는지 대해 분석하려고 하였다. 하

지만 여전히 개개 범죄인의 범행이유에 따른 당시 사회상의 변화, 이 시기 언론에 의해 표현되는 범죄인과 범죄 집단의 인식,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관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죄인의 처벌 등 많은 연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과제들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Abstract

Hanseong-bu crimes and criminals' characteristics
in the judicature <Drafting Materials>

Yoo, Seung-Hee^{*}

This study looked into properties of the documents in the judicature <Drafting Materials(起案)> as well as the recorded aspects of Hanseong-bu crimes and criminals' characteristics between 1896 and 1906. Serious crime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above were mostly among total crimes written in <Drafting Materials>, but major offenses like officials' bribe and embezzlement including political crimes as well as violence, economic, and social crimes were found to be more than 90%. Through this, characteristics of crimes in Hanseong-bu from 1896 to 1906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erty crimes infringing and threatening individual properties were widely committed in Hanseong-bu. The percentage of property crimes dealt with by the judicature between 1896 and 1906 was over 50%, and it increased by more than average 70% in the 1900s.

Secon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Hanseong-bu after the Age of Civilization attracted various classes of people into the city, which finally resulted in increases in crimes of Hanseong-bu. 45% of criminals in Hanseong-bu were committed by the eight level of farmers who came up to the city, and among them 57.6% were from Gyeonggi-do. The reason why

* Professor at Institute of Urban Humanities University of Seoul

property crimes were more intensively generated in Hanseong-bu was due to country people's robbery and theft.

Third, crime rates in Dongseo(東署) were highest and areas around Four Doors(4대문) were the crime-racked districts. Major criminals of Hanseong-bu were between 20 to 35 years old, and they were 'Jikyok'(occupational classification) of merchants and craftsmen. Criminals who lived in Hanseong-bu were mostly merchants and craftsmen as well as laborers, unemployed men who had a little properties rather than other 'Jikyok'. In addition, the relations with ages and crime types were found, so that robbery, theft with activity were committed by those who were 20 to 30 years old(57%), and they were major criminals of property crimes. On the contrary, criminals who were aged 26 to 50 committed forge, which showed even age groups than other crimes. In case of crimes of opening a grave, criminals aged 46 to 60 were shown to be more than 60%, so old people were major criminals of the crime rates.

Key Words : The judicature, Drafting Materials(起案), crimes, Hanseong-bu, property crimes, crime rates